

#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

## ■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

□ 일 시 : 2015. 3. 17.(화) 10:00 ~ 16:07

□ 안 건

1.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3.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□ 장 소 :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: 7名(김금용, 김경선, 신은호, 최석정, 손철운, 이도형, 황인성 의원)

※ 참석공무원 :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등 30명

□ 부의안건

1.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<질의 및 답변>

○ 신은호 의원

- 위원회 위원으로 버스업체 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음.

⇒ 관련업종 종사자로서 업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음.

2.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⇒ 수정가결

※ 별표 제7호 점용물의 종류 제7호 중 “노점·상품진열대” 삭제 등

<질의 및 답변>

○ 손철운 의원

- 기 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점용허가를 요구하게 되면 각 구별로 통일된 기준도 없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

⇒ 각 구별로 노점을 허용한 여건이 달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, 현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.

-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불허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

⇒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임.

- 보편적인 기준을 시에서 수립하고 구별로 세부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.

⇒ 검토하겠음.

○ 최석정 의원

- 노점상을 허용할 때는 공익적 목적을 최대한 고려하여 크기, 형태, 색상, 위치, 수 등의 기준을 정하여 허가를 하여야 할 것임.
- ⇒ 각 구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음.

○ 신은호 의원

- 일선에서는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선출직 단체장들의 영향이 선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. 구체적인 부칙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.
- ⇒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포괄적인 기준을 수립하겠음.

○ 김금용 의원

- 노점의 위치는 허가권자가 판단하겠지만 크기나 점용자의 자격 등은 군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을 수립하기 바람.
- ⇒ 알겠음.

3.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<질의 및 답변>

○ 손철운 의원

- 도로 복구 시 현장확인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가 부실하게 복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.
- ⇒ 그렇게 하겠음.

- 도로포장 이후 5년 이내에는 굴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굴착되는 사례를 볼 수 있음.
- ⇒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결과에 따르게 됨.

○ 김금용 의원

- 도로가 굴착 이후 2차 복구까지 잘 관리하여 필요 외 도로복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.
- ⇒ 알겠음.

#### 4.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

⇒ 보류

※ 집행부에서 원인규명과 조치계획, 가산세 처리방향, 법인세 납부계획, 과세 처분 불복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.

##### <질의 및 답변>

###### ○ 최석정 의원

- 저가양도 및 불성실 신고로 법인세를 추징받는 상황인데,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209억원은 피할 수 있었지 않나,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?

⇒ 공사에서 감정평가한 시점은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5,600억 원의 평가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 것임.

- 국세청에 추징의 근거를 두는 것은?

⇒ 특수관계자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한 세금부과임.

-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음. 시 또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...

⇒ 국세청에서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.

- 법인세와 공사의 임대수입 보전금으로 약 2,000억원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터미널 매각이 추진될 수 있었겠는가?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공사와 시가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축소한 것 같다는 강한 의구심이 듬.

- 시에서 채무보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?

⇒ 현재로선 대안이 없음.

- 시에서는 부담할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? 국비 매칭도 못하고 교육비 전출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

⇒ 시도 어려운 형편인 것은 알고 있음.

- 행정편의로 일단 징수유예만 하면 그만인가?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 가산세만 해도 5년간 450억이나 됨.

⇒ 공사 내부에서는 터미널 매각으로 공사가 득을 본 것이 아니므로 시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음.

- 현재의 결과는 공사와 시의 합작품 아닌가?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는 얼마인가?

⇒ 약 93억원/연 임.

- 향후 구체적인 납부계획도 없고 과세 불복 대응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아

닌가?

⇒ 향후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면 수립할 계획임.

-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을 통해 앞으로의 행정에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임.

#### ○ 손철운 의원

-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행정에 책임을 다했으면 함.
- 용도지역 변경이 몇개월만 늦춰졌다면 법인세 추징은 없었을 것. 시의 터미널 매각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이미 예견이 되었을 것임.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.

⇒ 당시 급한 상황속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됨.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시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임. 과거의 일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 일을 처리하겠음.

#### ○ 황인성 의원

- 민간기업이라면 어떻게 처리 되었겠는가? 현재 책임질 사람이 있는가?  
⇒ 책임자를 문책하였을 것임.
- 3개월만 매각을 늦췄으면 법인세 추징이 없었을 것인데...왜 그렇게 서둘러 매각을 했는지...  
⇒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유동성 위기와 익년도 세출 예산 편성을 고려했을 것임.
- 재발방지를 위해 잘잘못은 철저히 가려야 될 것이며,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율미은하레일 사업과 액수 및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점 등 여러모로 비슷하다고 생각됨. 3개월 만에 시가 부도나는 것도 아닌데 성급히 추진한 이유를 알 수 없음.  
⇒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.

#### ○ 이도형 의원

- 매각을 3개월 늦췄으면 법인세 추징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?  
⇒ 용도지역 변경 이후 6개월이 지나 매각을 했다면 추징은 없을 것임.
- 조세심판 청구 계획인가?  
⇒ 징수유예 신청 후 조세심판 청구 계획임.
- 당시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하고 법인세를 절감하려했던 안이했던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. 앞

으로의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⇒ 알겠습니다.

○ 신은호 의원

- 당시 긴박한 상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할 것임. 또한,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.

⇒ 상당히 긴 기간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음. 정식으로 보고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됨.

- 그 점을 이해하더라도 법인세 추징 조사 과정에 있음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했을 것임.

⇒ 알겠습니다.

○ 김금용 의원

-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이미 법인세관련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며, 도대체 터미널 매각으로 얻은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?

⇒ 5,600억원을 원가로 생각하면 법인세를 제외한 약 1,800억원 정도로 계산됨.

일시	차수	심사안건	비고
-	-	-	-

보고자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